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자 추가〉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45호)

2025.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1.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자 추가	2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5일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부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지역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재활용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1항).

Ⅲ. 검토의견

1.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자 추가

개정안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의무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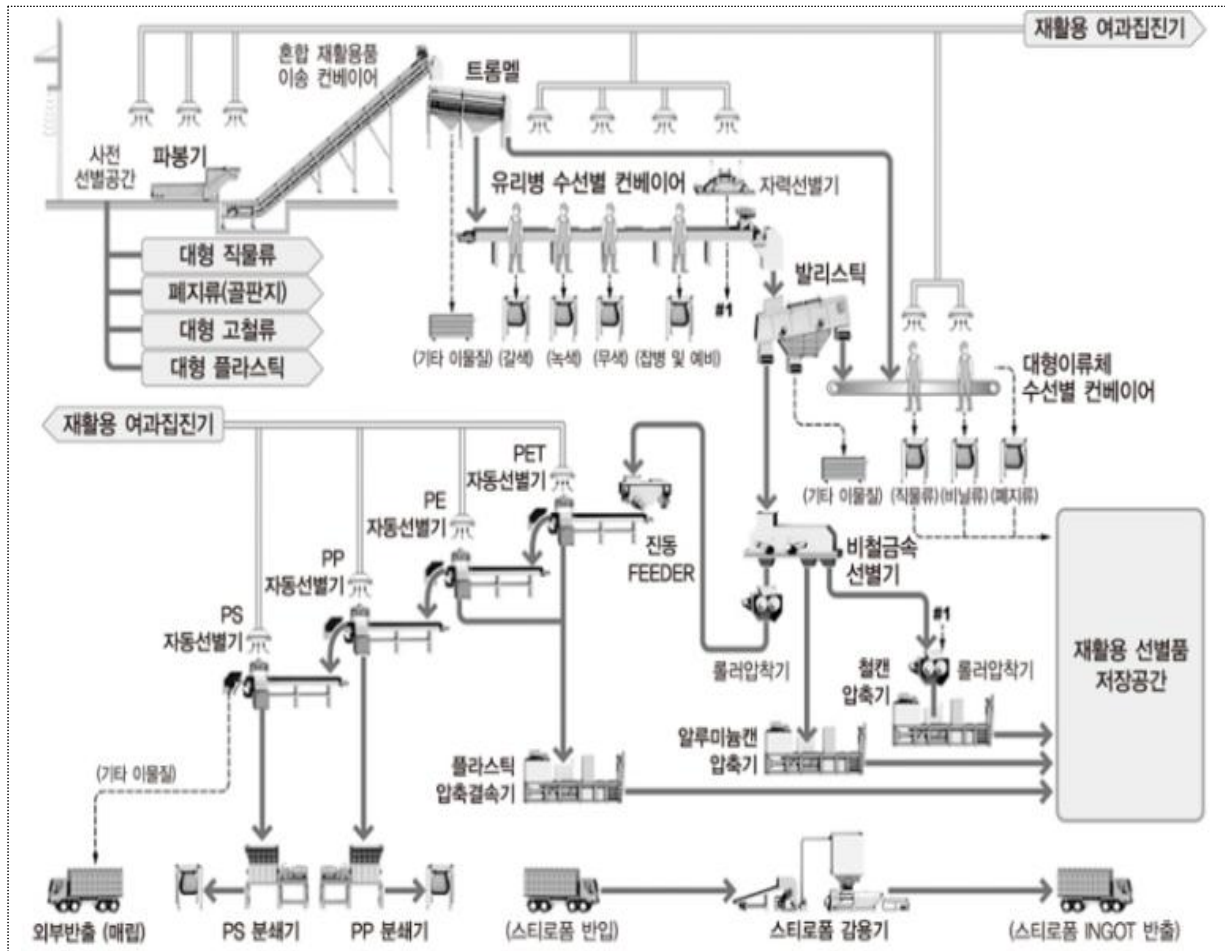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u> 는 ----- ----- -----.

현행법¹⁾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수집·보관·선별·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설치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은 일반적으로 반입·투입 설비, 기계식 선별기(자력선별, 비중선별 등), 플라스틱 선별 설비(광학 선별기), 압축기, 반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구성도 사례]



자료 : 환경부

2023년 12월 말 기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서울 15개소, 경기 27개소 등 전국에 총 18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전국에 설치된 시설 기준 1일 총 4,973톤을 처리함.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현황]

지자체	총 시설 수 (개소)	총 처리용량 (톤/일)	지자체	총 시설 수 (개소)	총 처리용량 (톤/일)
합 계	182	4,973			
서울	15	870	강원	17	330
경기	27	1,347	충북	10	181
부산	15	244	충남	14	334
대구	6	161	경북	22	349
인천	1	50	경남	20	391
광주	1	10	전북	9	227
울산	1	5	전남	21	263
세종	1	50	제주	2	161

자료 : 환경부

개정안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자에 택지개발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²⁾상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재활용시설에 대하여도 설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취지임.

2) 현행법상 택지개발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설치부담금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폐기물시설축진법」상 택지개발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는 택지 및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개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임.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여 개발 지역 내에서 재활용 처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재활용을 통한 자원 회수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활용기반시설은 폐기물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위해 수거·분류·가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즉 「폐기물시설축진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 이후 공공 위생·환경 보호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비하여, 자원 순환을 위한 추가적인 과정을 위한 시설임.

두 시설의 근본적인 차이를 감안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은 택지개발 사업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가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나, 이에 반해 재활용기반시설은 개별적인 개발사업자에게 설치 의무를 부여할 만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있음.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수는 있으나, 동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이므로 택지개발사업과 재활용기반 시설 설치 의무 사이의 연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폐기물시설축진법」상 택지개발사업자가 동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일부 지자체³⁾에 한정되고, 대부분 설치부담금으로 대신 납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납부한 설치부담금을 통해, 지역별 필요한 시설(폐기물처리시설 혹은 재활용기반 시설)을 설치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본 개정 내용은 택지 개발로 늘어나는 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시설축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6

3) 판교, 남양주, 파주, 김포 등